



제23조 징수

● 법 제23조 【징수】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0. 1. 1 개정)

I. 미달납부세액의 징수

1. 예정·확정신고의 과소납부와 징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징수절차가 적용된다. 즉, 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여기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함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하여 강제처분·징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결정·경정과 징수

결정·경정의 징수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본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결정이나 경정해야 하는바, 이 결정·경정의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시 결정과 징수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확정절차가 없었던 것이므로 경정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본 법 제21조를 준용한 결정을 하며 납부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II. 예정신고불성실과 징수

무신고·오류·탈루시 수사부과의 성격임

본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나,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 혹은 기타 다음의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본 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정신고불성실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정은 본 법 제21조에 의한 결정·경정은 과세기간단위(1. 1~6. 30 및 7. 1~12. 31)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확정신고시까지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결정의 성격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자체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정은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결정·경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조사결정된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정·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재화의 수입과 징수

1. 징수방법과 세액계산방법

관세징수 방법상의 징수

본 조 제3항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관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라 함은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가격포함후 징수가액계산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관세액을 포함한 후 계산한다.

2. 위약물품과 과오납수입재화의 징수·환급

위약물품의 환급 및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교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이라면 관할세

관장이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오납부 수입재화의 징수·환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